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말정산 대상자가 본인만 해당하고, 국세청간소화 자료 외 추가제출 자료가 없을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

1. 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일반근로자(사업소득자, 일용직 제외)

2. 제출서류 ★자료 미제출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마감!!

2-1. 필수제출서류

①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공제내역 안내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다운로드 → “PDF” 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 비밀번호설정 해제하여 제출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② 주민등록등본 제출(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이 충족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표시하여 제출(부양가족 공제 여부 직접 표시 必)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전년도 가족공제 변동 없는 분은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2-2. 추가제출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이메일 제출 후 원본 우편 발송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② 2020년 입사자 중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제출

③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현장관리자가 취합하여 기한 내 단체로 이메일 제출

4. 제출기한: 2021년 02월 05일(금) 16:00 까지(기한영수 / 정해진 날짜 이후 접수 불가)

5. 제 출 처: 메일(1068630752@s-waykorea.com), 메일발송 시 제목 통일 [2020연말정산_사업장명]

퇴사자에 한해 개인제출 시 [2020연말정산_사업장명_이름]

우편(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 7층(방이동, 제이타워빌딩))

6.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다음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의료비세액공제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은 제외,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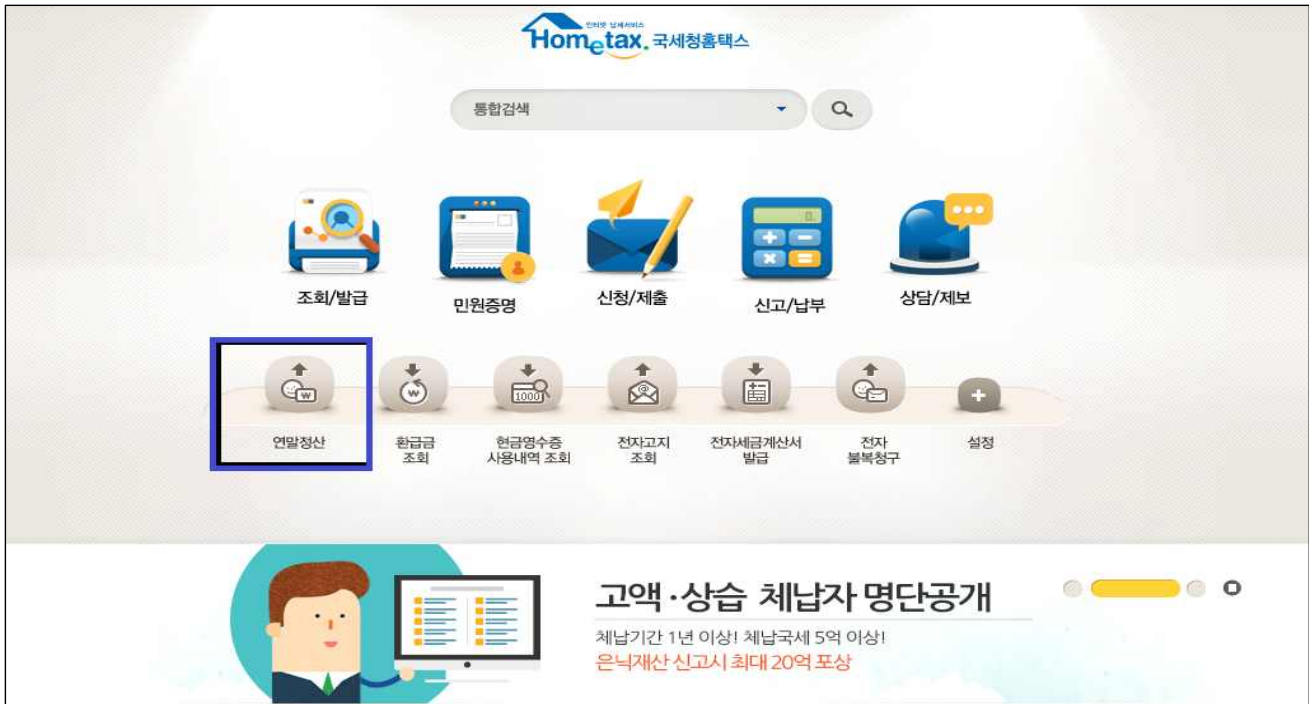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무자는 별도 판단없이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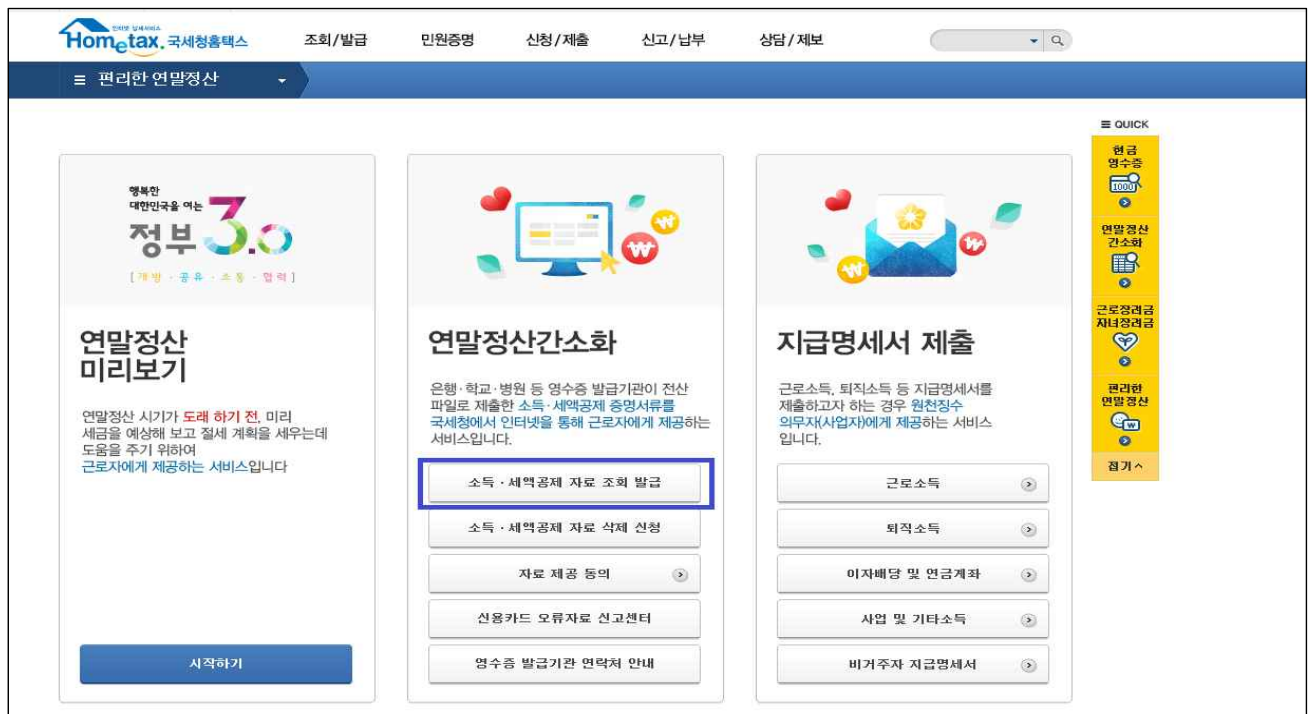
※ 연말정산 간편 상담 홈페이지 :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개인별 공제자료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 클릭



2. 연말정산간소화=>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클릭



3.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본인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 편리한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Download Inquired Items)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Print Inquired Items)

귀속년도: 2015년 1월 ~ 9월 귀속 년도를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조회 안내

·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step 1.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step 2. 내용확인 (클릭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step 3. 출력양식 선택 후 출력

step 4. 회사에 제출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항목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양육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내역 일괄 내려 받기 항목 선택=>PDF파일 제출=>이름수정불가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 편리한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귀속년도: 2014년 1월 ~ 12월 귀속 년도를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보험료 (Insurance) 3,397,804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2,152,501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0 기부금 (Donation) 0

기부금 기본내역

☒ 기부자 ☐ 사업자

선택: 0 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 일괄 내려받기 항목 선택

· 선택이 안되는 자료는 먼저 자료를 조회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 하기]는 [기본내역]만 다운로드 [상세내역]의 내려받기는 개별항목 조회 후 내려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장기주식형 저축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 의료비 ☐ 장기집합투자증권

☒ 교육비/직업훈련비/교육구입비

☒ 신용카드 ☐ 문서열기양호(비밀번호)설정

☒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전본성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아도비트 리더(Acrobat Reader)**와 **플러그인(Plug-in)**을 다운로드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내려받기

닫기

부금 지정 상의의사 기부금 15%

상은 경우,기부금단체)에 국세청 자료제출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로자(사업소득자)본인, 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 급한 기부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

대상 한도

금액	공제대상 한도
부금*100/110	소득금액의 100%
기부금*15%	소득금액의 100%
기부금*25%	근로소득 금액의 100%

주의 : 문서열기양호(비밀번호)설정 체크 반드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